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시행 2011.6.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1-86호, 2011.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별표 2)와 같다.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

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

축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

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 · 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86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6.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 20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상 품목
미곡류(6)	쌀, 찰쌀, 현미, 벼, 발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울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아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	호박, 오이
엽경채류(4)	배추 · 양배추(포장된 것),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근채류(6)	무말랭이, 무 · 알타리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	양파, 대파 · 쪽파 · 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	피망(단고추),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류(63)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동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분,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뽕은감, 꽃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류(만감, 레몬, 탄저린, 오렌지, 자몽, 금감, 한라봉, 청견),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수실류(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1)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기타(4)	별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축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구분	분류내용
제 1류	살아있는 동물
제 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 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
제 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물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 9류	커피, 차, 마테(茶의 一種)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선과 맥이(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HS번호	품명
0102	소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105: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HS번호	품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 · 옹고유와 옹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 건조한 것 · 물에 삶았거나 찐 것 · 성형한 것 ·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 ·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 · 냉장 · 냉동 · 염장 · 염수장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호콘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 · 귀갑 · 고래수염과 그 털 · 뿔 · 사슴뿔 · 발굽 · 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연함 · 해리함 · 시뱃과 사향 · 캔대리디즈 · 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511	누에번데기
0601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 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 · 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 ·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 ·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 · 쪽파 · 마늘 · 리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양배추 · 꽃양배추 · 구경양배추 ·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추(라투카 시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당근 · 순무 ·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 선모 · 세러리아크 · 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 절단한 것 · 얇게 썬 것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 · 칩뿌리 · 샬렙 · 국아 ·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교 아자의 수

축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HS번호	품명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애버카도우 · 과아버 ·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 ·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 · 버찌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 냉동 건조 또는 염수 ·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3	마태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캡시쿰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 · 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소도구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 · 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 · 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에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 · 조분 · 분말 · 플레이크 · 입 및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명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 · 과실 및 포자
1211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키처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1	둔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 · 라드유 · 올레오스테아린 · 올레오유 및 벨로우유로서 유화 ·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류 또는 면실류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아자유, 팜핵유 또는 비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거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테스테탈화한 것, 리에스테탈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 · 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페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 ·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 설육 또는 피
1603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두의 각 ·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HS번호	품명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 · 조분 ·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사그네 · 그노치 · 레비오리 ·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 난알상 · 진주상 ·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난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시일링웨이퍼 ·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 · 과실제리 · 미말레이드 ·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1	커피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 차 ·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 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 · 브로드와 수프 · 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5	베르뮷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 · 배술 · 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 ·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301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HS번호	품명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셔루트·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3. 농산물 가공품 : 259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7)	과자(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 캔디류(양갱)
빵 또는 떡류(9)	빵류(식빵, 도넛,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떡류,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11)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페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류(3)	잼, 마말레이드, 기타잼류
엿 류(3)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식육 또는 알가공품(3)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두부류 또는묵류(5)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20)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아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면류(6)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품차
음료류(3)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두유류(4)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유
발효음료류(3)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1)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3)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7)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식품

축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장류(15)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7)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2)	드레싱, 마요네즈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2)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주류(12)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식품류(4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팜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찌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신식, 도시락류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로얄젤리(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버섯가공식품(버섯 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효모식품(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품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6)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식육가공품(10)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유가공품(20)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9)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영양소	식이섬유(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단백질(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필수지방산(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기능성원료	터핀류(4)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페놀류(4)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지방산 및 지질류(5)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당 및 탄수화물류(16)	류코다당·단백(축산물을 원료로한 것), 식이섬유(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 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 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발효미생물류(1)	홍국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1)	대두단백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별표 3]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p>○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p> <p>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p> <p>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튕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p> <p>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p> <p>ex4)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p>
나. 원산지 미변경	<p>○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 단순히 물 또는 온·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p> <p>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p> <p>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p> <p>ex3)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p> <p>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 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p> <p>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p>
다. 원산지 전환	<p>○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p> <p>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p> <p>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p> <p>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p>